

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해당성 관련사항

□ 통상임금 개요

-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①정기성, ②일률성, ③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함
 - 통상임금은 가산임금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), 연차수당 계산의 기초액으로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
 - * KT 통상임금 : 기준연봉월정액 → (기준급+역량급+역할급+직책급) / 12월

□ 판결요지

-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
- 그러나, 지급일 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'소정근로'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 아님
 -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임금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 지급일 시점 재직이 불확실하여 고정성 결여

□ KT 통상임금 해당성

- 금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있는 KT의 성과급
 - 성과급 최저지급율 (일반직 직원 월 기준급의 600%, 직책 550%)
- 관련항목 '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'하고 있어 외부 법률자문 의뢰결과
- 금번 통상임금에 대한 적용은 대법원, 노동부의 추가 지침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결론

□ 현 성과급과 '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 지급' 기준의 형성과정

- 공사시절의 상여수당 등을 통폐합하여 기본급과 성과급의 규모 확대
- 특히, 2010년 연봉제 도입과 함께 효도휴가비, 임금보전성과급을 기준연봉과 성과급으로 전환, 규모 지속 확대 (과거 기본급에 상응하는 기준연봉 10% 상향)
- '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 지급' 기준은 성과급으로 전환된 항목인 상여수당, 효도휴가비, 임금보전성과급에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음

□ 향후 쟁점사항

- 대법원, 노동부의 추가지침 발표에 대한 예의 주시
-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 추진

□ 보수항목

구 분	세부항목	기 준	통상임금
기준연봉	기준급	• 직군별 4단계 PayBand	○
	역량급	• 인사평가에 의한 차등 인상	
	역할급	• Band2 월20만원, Band3 월30만원 Band4 월50만원	○
	직책급	• 본사지 팀장/지사장급 : 월30만원 • 현업 팀장급 : 월20만원 • SM : 월15만원	○
성과급 (일반직)	전사	• $300\% + \alpha$ • $\alpha; \{(\text{그룹 영업이익률}-\text{이익률 목표}) + (\text{그룹 매출성장률}-\text{성장률 목표})\} \times 10$	△ (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 지급) ※대법원, 노동부의 추가지침 발표에 따른 대응 준비
	부문	• $150\% \pm 50\%$ • 평가단위 최상위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	
	담당	• $150\% \pm 50\%$ (직책자는 $\pm 100\%$) • 담당/지사급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	
	팀	• $150\% \pm 50\%$ • 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	
수당	초과	• 일근 : 기준연봉월정액 $\times 1.5 / 209 \times 23\text{시간}$ • 교대 : 기준연봉월정액 $\times 1.5 / 209 \times (18\text{시간} + \text{출근일수 } 18\text{일} \text{ 초과 } 1\text{일당 } 1\text{시간})$	X (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)
	휴일	• 기준연봉월정액 $\times 1.5 / 209 \times 8\text{시간} \times \text{휴근일수}$ - 반일 휴일근무시는 4시간 가산	
	야간	• 기준연봉월정액 $\times 0.5 / 209 \times \text{야간근무시간}$ - 야간근무시간대 : 22:00~06:00	
	현장	• 기준연봉월정액 $\times 1.5 / 209 \times 7\text{시간}$ - 전주/지하에 케이블 포설 및 선로유지보수에 월15일 이상 종사한 직원	
	연차	• 기준연봉월정액 $\times 1.0 / 209 \times 8\text{시간} \times \text{미사용일수}$ - 축진하였으나 미사용한 연차는 제외	

□ 복리후생비 (연단위 정기지급 항목)

명칭	적용기간	기 준	통상임금
상조회비	2011.4.25~ (가입~10년)	- 개요 : 장례서비스 지원 상품 - 금액 및 기간 : 월 2.5 ~ 4만원(<u>회사 지원 1.25만원</u>, 차액은 본인 부담), 10년 만기 - 가입대상 : 재중중인 임직원 중 희망자 - 신규입사시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-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지급	X (가입자 한/ 지급일 현 재 재직자 한 지급)
상호 부조비	2012.1.1~ (퇴직까지)	- 개요 : 애경사 시 임직원간 상호부조(보험) - 금액 및 기간 : 월 4만원(<u>회사 2만원</u>, 본인 2만원), 퇴직시까지 지원 - 가입대상 : 전체 임직원 - 경과조치 : 지급사유당 500만원(총 2회 지급) - 지급사유 : 사망(본인/배우자, 본인/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), 결혼(본인 및 자녀) - 사유미발생 환급 : 본인 거출금의 1.1배 환급	X (지급일 현 재 재직자 한 지급)
연금저축	2007.1.1~ 2016.12.31	- 가입금액 및 기간 : 월 5만원 <u>회사 지원</u> - 가입대상 : 2006.12.31일 기준 재직자	X (지급일 현 재 재직자 한 지급)
	2012.1.1~ 2021.12.31	- 가입금액 및 기간 : 월 5만원 회사 지원 - 가입대상 : 2011.12.31일 기준 구)KTF직원 재직자	
선택적 복지포인 트	2011.1.1~ (퇴직까지)	- 제도설명 : 선택적복지에 의해 복지카드 포인트 충전 - 충전금액 및 시기 : 1월 130만p, 7월 30만p (1p=1원) - 대상 : 전체 직원(전권, 청경, 재직전출자 포함) - 재원 : 사내근로복지기금 60만pt, 회사 예산 100만p	X (지급일 현 재 재직자 한 지급)
단체보험	- (퇴직까지)	- 개요 : 배우자 사망, 본인/배우자 재해장애, 암진단 시 보험금 지급 - 보험료 지원금액 : 연평균 14만원/1회 - 가입대상 : 전체 임직원	X (생활보조 적 순수 복 리후생비)
급식.통근 보조비	급식보조비	- 출근일수 1일당 7,000원(월상한 147,000원) - 현물로 급식 제공 또는 출장 등에 의해 식비 해당 금액 지급시 제외	X (실비변상 적 복리후 생비)
	통근보조비	- 출근일수 1일당 6,000원(월상한 126,000원) - 출장 등에 의해 교통비 해당하는 금액 지급시 제외	